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08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김동아 · 이수진 · 김준혁
서영교 · 정춘생 · 김원이
박홍근 · 강준현 · 김문수
임오경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제도는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단절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영업자 역시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일·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에 대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안 제77조의11 신설).

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지급함(안 제77조의12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 제77조의11에 따른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및 제77조의12에 따른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으로 한다.

제5장의4(제77조의11부터 제77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직
급여등의 특례

제77조의11(자영업자의 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임신 중인 여성 피보험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양육을 이유로 휴직(휴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이하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가 제1항의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체인력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와 제2항에 따른 대체인력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12(자영업자의 출산전후휴직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직급여 등(이하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과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13(준용) ①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로 보고, 제73조제4항 중 “육

아휴직 급여”는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요건”으로 본다.

②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으로 보고,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 지급 요건”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확인·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장”은 “제5장의4”로,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각각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제1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장의4에 따른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대체인력고용지원금,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받은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대체인력고용지원금 및 자영업자출산전
후휴직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대체인력고용지원금 또
는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험료) ① (생 략)	제6조(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② ----- ----- ----- ----- ----- -----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산전후급여등, 제77조의11에 따 른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및 제77조의12에 따른 자영업자출 산전후휴직급여등----- -----.
③ (생 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5장의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

<신 설>

후휴직급여등의 특례

제77조의11(자영업자의 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임신 중인 여성 피보험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양육을 이유로 휴직(휴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이하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가 제1항의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체인력고용지원금”이라 한다)

<신 설>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육아
휴직급여와 제2항에 따른 대체
인력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 지
급수준, 지급기간, 신청 및 지
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12(자영업자의 출산전후
휴직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
관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
을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직급여 등(이하 “자
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이
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
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
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7
조의4제1항 또는 제77조의9제1
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출산
전후휴직급여등의 지급요건, 지

<신 설>

급수준, 지급기간과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13(준용) ①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로 보고,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급여”는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요건”으로 본다.

②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으로 보고,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 지급 요

제116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신설>

건”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확인
·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 · 자영
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의 심
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
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제5장”은 “제
5장의4”로,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는 각각 “자영업자육아휴직급
여”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
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제1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5장의4에 따른 자영
업자육아휴직급여, 대체인력
고용지원금, 자영업자출산전

	<u>후휴직급여등을 받은 자</u>
--	---------------------